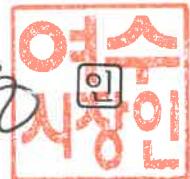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2023.12.6



여수시 조례 제1989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89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 “보호장려하며”를 “보호·장려하며”로, “여수시(이하“시”라 한다)”를 “여수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으로, “업무에 속하는”을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을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제23조의 규정”을 “제23조”로 하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로 하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3호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규정”을 “제12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를 각각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17조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한다.

제20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2조 단서 중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를 “다만, 「특허법」 제

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특허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여수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5조”으로, “자유발명”을 “개인발명”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하고 제1항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내지”를 “또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를 “승계여부와 그 내용 및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생략) <p>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p>	<p>제1조(목적)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여수시 소속 공무원 ----- ----- 보호·장려하며 ----- ----- 여수시-----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 ---.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 -----. (현행과 같음) <p>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 ----- -----.</p>

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여부를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 .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

제3조 -----

----- .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

----- .

제6조(발명의 신고) -----

----- 지체 없 -----

----- .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

- 제10조제2항 -----

----- .

② ----- 제1항 -----

----- .

제8조(권리의 양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 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 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지체 없

제9조(출원) ① 제8조

② ----- 제1항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

----- 제7조

----- . ----- 해당 -----

② --- 단서-----

- 제6조-----

제11조(심의요청) ① ----- 제9조

- 제23조-----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등록 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의장권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

--- 지체 없이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

② ----- 제1항-----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

-----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지체 없이-----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 보상금의 지급) -----

-- 제13조-----

제15조(등록보상금) -----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디자인권 -----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

12조-----

----- 그 밖의 -----

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 요청)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처분 보상금의 지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

1.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2.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
3. -----

----- 제1호-----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2조
----- 그 밖의 -----

-----.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 요청) ----- 제17조

-----.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
--- 제16조

- 2명 -----

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

----- 제16조 -----

----- . -----

----- 그렇지 않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

----- .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특허가 ---.

제23조(여수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 -----

--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
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
이 있을 때에는 이조례에서 정
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
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
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
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8조(직무발명 상황통고) 시장
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
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고하여
야 한다.

2. 제25조-----개인
발명-----

3. ----- 따른 -----

4. · 5. (현행과 같음)

제25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
발명-----

② 제1항-----

----- 또는 -----
-----.

제28조(직무발명 상황통고) -----
----- 승계여부와
그 내용 및 그 밖의 -----

-.